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- 대응
 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- 저장
 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- 폐기
 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(예. 분진폭발 위험성)

- 자료 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 번호	함유량(%)
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		64742-54-7	100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15 분 동안 다량의 물로 깨끗이 씻어낼 것,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제거한 후 비눗물로 노출 부위를 씻어낼 것

다. 흡입했을 때

- 신선한 곳으로 즉시 옮길 것
- 호흡이 멎었을 경우 인공호흡 및 필요할 경우 산소를 공급할 것
-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라. 먹었을 때

-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자료 없음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

- 포말 소화제, CO₂, Dry Chemical(고체 화공약품), 물 분무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- CO, CO₂

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밀폐된 화재 장소에 들어갈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기구를 착용할 것
- 과열된 용기는 물로 식힐 것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- 점화원을 차단하고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중지시킬 것
- 위험지역에서는 흡연, 불꽃 및 불을 금지 할 것
-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것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제품이 토양이나 수원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
-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폐기를 위해 유출지역보다 넓게 둔덕을 쌓아둘 것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

- 열 및 습기를 피할 것

나. 안전한 저장방법

- 용기는 확실하게 밀폐시키고 처음 들어온 저장용기에 계속 저장할 것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- 자료 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작업장 전체 환기 및 국소 배기시설 설치 할 것

다. 개인보호구

• 호흡기 보호

- 정상 사용 환경하에서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 없으나 먼지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사용할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호흡기구를 착용
- 유기물 정화 장치를 갖춘 전면 부착용 호흡기구를 착용할 것

• 눈 보호

- 보호안경을 착용함

• 손 보호

- 화공약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갑(예: 고무장갑)을 착용함

• 신체 보호

- 손 보호 시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

- 투명한 액체

나. 냄새

- 탄화수소 냄새

다. 냄새역치

- 자료 없음

라. pH

- 자료 없음

마. 녹는점/어는점

- 자료 없음
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

- 자료 없음

사. 인화점

- 232 °C 이상(ASTM D92)

아. 증발속도

- 자료 없음
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

- 해당 없음
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

- 0.9 ~ 7.0%

카. 증기압

- 자료 없음

타. 용해도

- 녹지 않음

파. 증기밀도

- 자료 없음

하. 비중

- 0.8 ~ 0.9

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

- 자료 없음

너. 자연발화온도

- 해당 없음

더. 분해온도

- 자료 없음

러. 점도

- 94.4 ~ 98.0 cSt (@ 40°C)

머. 분자량

- 자료 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,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분리됨

나. 유해반응의 가능성

- 없음

다. 피해야 할 조건

- 열, 화기와와의 접촉을 피할 것

라. 피해야 할 물질

- 강한 산화제

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불완전 연소 시 CO 생성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자료 없음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- **급성독성**

- 경구**

- 자료 없음

- 경피**

- 자료 없음

- 흡입**

- 자료 없음

- **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**

- 자료 없음

- **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**

- 자료 없음

- **호흡기과민성**

- 자료 없음

- **피부과민성**

- 자료 없음

- **발암성**

- 해당 없음

- **생식세포변이원성**

- 자료 없음

- **생식독성**

- 자료 없음
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)**

- 자료 없음
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
- 자료 없음

- **흡인유해성**

- 자료 없음

- **기타 유해성 영향**

- 자료 없음

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 (급성독성 추정치 등)

- 자료 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·육생 생태독성

- 자료 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자료 없음

다. 생물농축성

- 자료 없음

라. 토양이동성

- 자료 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

- 자료 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폐기물은 승인된 산업용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다량일 경우 적절한 연소, 소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(UN No.)

- 자료 없음

나. 적정선적명

- 자료 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자료 없음

라. 용기등급

- 자료 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

- 자료 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

- 자료 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 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 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제 4 류 인화성 액체 제 4 석유류, 6000 리터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자료 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S-OIL(주) 분석 자료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-130 호

나. 최초작성일자

- 2018. 09. 06.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2 회, 2022. 07. 12.

라. 기타

- EU 위원회는 IP 346 에 의해 측정했을 때 3% 미만의 DMSO(Dimethyl Sulfoxide)를 함유하는 물질에 대해서 발암 물질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음.